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19

발의연월일: 2022. 10. 25.

발 의 자: 안호영·김승남·김홍걸

소병훈 · 신정훈 · 양정숙

위성곤 • 윤미향 • 윤재갑

윤준병 • 정춘숙 • 주철현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며,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이 관련 사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업분야 경제 활력 저하,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 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 까지 10년 연장함(안 제8조제1항).
- 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다.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 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3조제2항).
- 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 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 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개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49조).
- 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 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16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을 각 "2032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 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가목 중 "2021년"을 "2024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22년"을 각각 "2025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167조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	등) ①
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	
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	
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u>2022년</u>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	-2032년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u>.</u>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	
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	
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	②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u>2022년</u> 12월 31일까지	<u>2032년</u>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 사가 교환·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 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 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 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 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 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 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 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 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 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③
<u>203</u>
2년
<u>2032년</u>
④ (현행과 같음)

-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지 ① (생 략)
 - 1. ~ 3. (생략)
 -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전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_
	-
	-
	_
<u>2032년</u>	_
<u>.</u>	
3	_
	-
	_
	_
	_
	_
	_
	-
<u>2032년</u>	_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지	ŀ
관련 감면 등) ①	_
	-
	-
	-
	_
	_

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5. (생략)
- ② (생략)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략)
 -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한다.
 - 1. (생 략)

<u>2032년</u>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
행과 같음)
②
<u>2025년</u>
<u>.</u>
1. (현행과 같음)

-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 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 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 를 감면한다.
 - 가. <u>2021년</u>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 다.
 - 나. <u>2022년</u> 1월 1일부터 <u>2022</u> <u>년</u> 12월 31일까지는 취득 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 0을 각각 경감한다.
- 2. ~ 5. (생략)
- ③ (생 략)
-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1의2
<u>.</u>
가. <u>2024년</u>
나. <u>2025년</u> <u>20</u>
<u>25년</u>
·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관한 법률 | 제70조제1항에 따 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 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 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 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 제2조제7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 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 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2032년
.
②

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3. (생략)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기간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해양오염방제용 및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 3. (생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 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u>202</u>

	<u>2032년</u>
	1. ~ 3. (현행과 같음)
제	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2
	- 032년
	
	1. ~ 3. (현행과 같음)
제	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 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 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로 한다.

<u>2032년</u>